

21년 유망기술 사업화촉진지원 주요 Q&A

◆ 아래 Q&A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망기술 사업화촉진 지원사업 담당자(053-210-9680)반드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및 사업 신청 관련

Q1. 협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협약기간은 협약일 ~ '21. 11. 30 으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Q2. 지역 참여 제한이 있는가요?

A. 아니요. 지역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Q3. 이미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를 지원받은 기업은 이 과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일 로봇제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다른 로봇기술 제품화로 신청한 경우는 가능하나, 既지원한 유사과제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4. 제작대행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을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선정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제작대행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을 선정하셔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작대행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에 대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참여확인서를 사업계획서 별첨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2. 사업비 관련

Q1. 인건비 편성도 가능한가요?

A. 인건비 편성은 불가합니다. 과제비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민간부담금은 현금만 인정이 되나요?

A. 네. 현금 100% 부담하셔야하며, 현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과제비에서 여비 및 사무용품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집행 불가합니다.

이 과제의 과제비는 로봇제품제작에 필요한 직접비만 집행 가능하며,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여비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Q4. 주관기관은 반드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유망기술 사업화촉진지원사업의 민간부담금은 총 과제비의 20% 이상 (현금 100%)입니다.

Q5. 만약,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 국비지원금은 수행기관의 민간현금 입금확인 후 → 협약 진행 → 협약 후 100% 지급이 되며, 사업비관리시스템의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과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Q6. 지급된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계좌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비 카드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비를 사용하셨을 경우, 사업비관리시스템 상 해당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회계법인에게 제출됩니다.

Q7. 과제수행완료 후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이 과제의 과제비는 주관기관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관기관은 “과제비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진흥원의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합니다.

Q8.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후 과제비 사용 잔액 중 국비지원금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과제비에 포함하여 사용가능합니다.

Q9. 환수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환수금액 및 반납에 필요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관기관에서는 납부기한 내에 지정계좌로 안내받은 환수금액을 반납하시고 송금확인증을 진흥원으로 보내주시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3. 과제 지원내용 관련

Q1. 세부 지원내용 중 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성능평가를 필수로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A. 이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제신청 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Q2. 공고문에 따르면 성능평가는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기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단, 위의 기관이 아닌 그 외의 기관에서 성능평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3. 성능평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제 신청시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능평가를 외부에 위탁을 해야 하나요?

A. 네. 위탁하여야 합니다.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시험평가기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과제결과물이 센서와 같은 부분품일 경우 인증으로 성능평가를 대체해도 되는 건가요?

A4. 본 과제의 성능평가 목적은 제시한 성능평가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인증 해당제품의 경우는 인증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인증 등 성능의 부분적인 인증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안전인증 등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전반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